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175호
- 발 의 자 : 박운기 의원(찬성자 12명)
- 발의일자 : 2016년 5월 3일
- 회부일자 : 2016년 5월 13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의 대상기관에는 투자·출연기관이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실태 조사 및 평가 대상기관에 투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한편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상설화시킴으로써 동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평가 대상기관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2년의 기한으로 운영되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함(안 부칙 제3조 삭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평가 대상기관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함.

나. 세부사항

- 서울시는 행정문서에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한글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문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자는

시장 요청사항('14.11.4.)과 조례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에 근거하여 해마다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2015년의 경우 2015.9.10.~11.9. 시행한 바 있음.)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리플릿, 안내판, 포스터, 소책자, 서울시청 홈페이지, 웹진 등이 공공언어로서의 정확성, 간결한 문장 구성, 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등의 어문규정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서울시 국어 정책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평가 대상기관에 누락되어 있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 전반에 걸쳐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공문서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배포·활용하여 실효성있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어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가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부칙 3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서울시의 대부분 조례의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경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화시킴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운영중인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2014년 9월 28일 구성된 것으로 분기별 약 1회에 걸쳐 국어 기본계획 자문 3회, 공공기관 행정순화어 심의 5회, 주요 정책사업명 자문 5회 등 꾸준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하는 부칙 제3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 의견

- 서울시는 공문서 등 공공언어 사용에 있어 올바른 한글 사용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대상을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붙임1>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명단

<붙임2>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존속기한 검토보고

<붙임3>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원장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사단법인) 대표	
2	부위원장	김정숙	고려대학교 교수, 세종학당 재단이사	
3	위원	김구현	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위원	강재형	문화방송 미디어연구소장	
5	위원	김보미	경향신문 기자	
6	위원	김찬석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7	위원	김혜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원장	
8	위원	민병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9	위원	이건범	(사)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10	위원	정수연	KBS 방송작가	
11	위원	최혜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12	위원	엄규숙	여성정책실장 (외국인·다문화가족 국어교육 총괄)	
13	위원	김태균	정책기획관(시 정책 총괄)	
14	위원	강태웅	행정국장(직원 교육 총괄)	
15	위원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 간사: 김영환 시민소통담당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존속기한 검토 보고

국어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가 존속기한 2년이 도래하여 존속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6조
- 하 는 일 :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자문·심의
- 구성인원 : 15명(시민단체·전문가 10, 시의원 1, 공무원 4)
- 임 기 : 2년, 연임가능(구성일자 : 2014. 9.28자 구성)

※ 서울시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설치근거	기능별 현황	존속기한 규정
152	법령 71, 조례81	의결14, 심의113, 자문25	없음145, 규정내용기재5, 2년명시2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자문·심의 실적 - 7회(분기별 1회)

- 국어기본계획 자문 3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순화어 심의 5회, 주요 정책사업명 자문 5건, 국어발전 및 보전 관련 자문 1건

검토의견

- 국어바르게 쓰기 위원회는 한글 전문가로 구성하여 서울시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기본계획 수립 자문, 행정순화어 심의 등에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

공문서 등의 공공언어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국어발전 계획 및 향후 국어 정책 추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서울시 국어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증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는 정책설계와 성과 점검의 기반 구축
- 대시민 노출이 많은 홈페이지, 안내문, 각종 표지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사례별 감수를 추진하여 업무에 활용할 실용지침 배포 필요

추진 근거

- 국어 사용 조례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 시장요청사항('14. 11. 4.)

행정문서에 이해하기 쉬운 한글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한글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문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실태조사 개요

- 사업명 :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수행기관 : (사)우리글진흥원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글 지원, 공공언어 교육 및 시민대상 글쓰기 교육 등 국어 업무 추진 경험이 있는 한글(국어) 전문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 서울시 중랑구청, 경상남도 하동군 등 다수 지자체 대상 공공문장 감수 및 대안 마련(공공언어 사용 지침) 실적이 있어 우리 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체임

○ 세부 내용

- 공공언어 실태 조사
 - 시 공문서, 홈페이지, 각종 안내문, 표지판, 홍보물 등의 공공언어 감수
 - 시 부서의 공공언어 관련 감수 요청 사항
- 시 공문서 등에 사용된 순화대상 용어의 발굴(대안어 검토 포함)

○ 결과 활용

- 공공언어 감수 보고서 편찬 및 시 전 기관에 배포·활용
- 서울시 국어 정책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항 목	내 역	금 액
실태조사	인건비	- 책임연구원: 1명×300만원×2월	6,000
		- 연구보조원: 1명×100만원×2월	2,000
	경비	- 회의비:	600
		· 자문회의비 3명×10천원×2회	42
		· 회의준비 3명×7천원×2회	25
		- 보고서 등 인쇄비: 5부×5천원	8,667
	①	인건비+경비	433
	②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 이내	9,100
원가	③=①+②	900	
부가가치세	③×10%		
합 계			10,000